

제192회 영등포구의회  
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2. 9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96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중앙부처 정보화 통합추진으로 신규사업 감소 등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일부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며,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(안 제8조~제14조)
- 나.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사항 반영  
(안 제1조,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1항)
- 다. 알기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 정비(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, 제6조제1항 및 제3항, 제7조)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
-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을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으로 단일화하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4조는 “법”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 하였으며,

현 행	변 경
기술·역무 기타	기술·서비스 및 그 밖에
수립·시행하여야	수립하여야
기본계획,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시행계획	기본계획

- 안 제6조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현행 조례에서는 “임명할 수 있다” 라고 임의 규정 형식을 취했으나 “법”에 따라 “임명하여야 한다” 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정보화 책임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.
- 그 밖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